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7. 9. 19.

나. 제 안 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7. 9. 19.

라. 상정 및 의결 : 제55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재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(97. 9. 26.) 상정 및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재정경제국장 박상익)

가. 제안이유

○ 종전 사법부 소속기관에서만 취급하던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일반행정기관인 동사무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에 관한 수수료를 규정하고자 개정.

나. 주요골자

○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시 수수료 징수

- 1건당 600원

※ 부천시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과 관련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동에서 실시하게 된 배경과 이유는?	○ 지금까지는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등기소에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대행하여 주었으나, 확정일자를 부여해 줌으로써 수수료가 시금고에 귀속되게 됩니다.
○ 수수료를 600원으로 정한 근거는?	○ 현재 사법부가 기관에서 600원을 받고 있고 내무부에서 시달한 지침에서도 전국적으로 동일되게 600원으로 받도록 하고 있어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.

4. 토론요지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8. 체계적인 심사내용

○ 없음

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309호
의결년월일	97. 9. 30. (제55회)

제출년월일:97. 9. 19.

제 출 자:부천시장

□ 제안이유

○ 종전 사법부 소속기관에서만 취급하던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일반행정기관인 동사무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에 관한 수수료를 규정하고자 개정

□ 주요골자

○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시 수수료 징수

- 1건당 600원

※ 부천시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과 관련

□ 관계법령발췌서

○ 지방자치법 제130조

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별표중 [증명]란 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구 분	기 준	요 액	비 고
14.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	1건	600원	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	개 정 안			
(별표)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				(별표)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			
구 분	기준	요액	비고	구 분	기준	요액	비고
증명				증명			
1～13 (생략)	(생략)	(생략)		1～13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
(신 설)	(신 설)	(신 설)		14.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	1건	600원	
14.(생략)				15.(현행 제14호와 같음)	현행 제14호와 같음	현행 제14호와 같음	